

conciencia는 정치적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도덕적, 종교적 또는 다른 다양한 원칙에 기초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의 것이거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이해되는 양심적 반대는 정치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한다. 정치적 정의와 개인의 양심 간의 충돌은 도덕적 성격의 여러 의문을 발생시키며, 이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양심적 반대를 들어 법을 위반한 자는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가?
- 사람들의 양심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완전한 제한인가, 아니면 특정 경우에 권력의 결정이 양심에 우선할 수 있는가?
- 양심적 반대의 이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는가?

이 섹션에서는 제기된 첫 번째 질문에만 답변할 것이다. 나머지 두 질문과 이 작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은 이 작업의 진행 과정에서 답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심적 반대의 일관된 주장은 반드시 양심에 따라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대체 의무를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양심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휴양소 또는 힘지역에서의 복무와 같은 의무가 그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 반대의 제도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히 공동체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민주적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한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양심적 반대는 의무의 내용에 대한 도전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의무의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